

세법연구 08-11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2008. 12

김우철 · 구자은 · 송은주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조세지출 현황	10
1. 조세지원제도	10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13
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7
다. 기타 설비투자 세액공제	20
라. 설비투자관련 감가상각제도	24
2. 설비투자관련 현황	26
가. 조세지출 현황	26
나. 설비투자 현황	27
III. 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30
1. 미 국	30
가. 설비투자 지원제도	30
나. 감가상각제도	35
다. 연구개발투자 지원제도	40
2. 영 국	42
가. 설비투자 지원제도	42
나. 감가상각제도	43
다. 연구개발투자 지원제도	45
3. 일 본	46
가. 감가상각제도	48
나. 연구개발관련 세제	54

다. 기타 설비관련 세액공제	59
4. 대 만	66
IV.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70
1.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70
가.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70
나. 연구개발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75
다. 감가상각제도 비교	77
2. 정책시사점	79
가.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	79
나.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81
다.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82
라. 특별상각방식을 통한 조세지원	82
마. 조세지원의 범형식	83
바. 조세지원의 대상범위	85
참고문헌	86

표 목 차

〈표 II-1〉 적용설비별 분류.....	11
〈표 II-2〉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연혁.....	16
〈표 II-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혁.....	19
〈표 II-4〉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출 추이.....	27
〈표 II-5〉 200대 기업 설비투자 연도별 추이.....	28
〈표 II-6〉 중소기업 설비투자 업체비율 추이.....	29
〈표 III-1〉 미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31
〈표 III-2〉 미국의 감가상각제도 개요.....	36
〈표 III-3〉 영국의 감가상각제도 개요.....	45
〈표 III-4〉 일본의 감가상각방법 개정내용.....	49
〈표 III-5〉 250%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계산.....	50
〈표 III-6〉 기존의 정률법과 250%정률법의 비교.....	51
〈표 III-7〉 일본의 특별상각.....	52
〈표 III-8〉 기타의 세액공제.....	60
〈표 III-9〉 사업기반강화설비 적용대상자.....	64
〈표 III-10〉 조세감면비율.....	68
〈표 III-11〉 공제대상 장비 및 투자세액공제 내용 정리.....	68
〈표 IV-1〉 조세지원 대상설비의 범위.....	72
〈표 IV-2〉 주요국의 연구개발지원제도.....	76
〈표 IV-3〉 주요국의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제도 비교.....	77
〈표 IV-4〉 주요국의 소액상각제도 비교.....	78
〈표 IV-5〉 주요국의 특별상각제도 비교.....	79

I. 서론

- 세계경제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은 투자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세제를 도입하고 있음.
 - 이는 현재의 투자는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특히 조세지출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8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정 공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각 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또는 지원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설비투자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설비자산 등의 감가상각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 측면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
 - 동 제도는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로서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시행과 미시행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0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시적인 경기조절

장치라기보다는 항구적인 조세감면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재와 같이 일시적인 조세지원제도로 두고 매년 적용시한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항구법화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설비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연구개발 설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보고서에 조세지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가속상각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가속상각제도의 하나인 특별상각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었음.

- 특별상각은 1994년에 잔존가액제도 폐지 및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추가상각을 허용함에 따라 폐지되었음.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는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특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였음.

□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제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연혁을 소개하고, 가속상각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연혁을 정리함.

○ 제3장 주요국의 제도는 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영국과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에 대하여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특별감가상각제도로 분류하여 정리함.

Ⅱ.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조세지출 현황

1. 조세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조세특례를 다룬 부분은 제2장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설비투자과 관련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가 있음.

- 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의 2)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가 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세무처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레이므로 제외하였음.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설비투자과 관련된 조세특례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가 있음.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 설비투자과 관련된 조세특례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4),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제30조)가 있음.

□ <표 Ⅱ-1>은 각 조세지원제도별 적용대상 자산 및 세액공제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3~20%의 공제율을 보이고 있음.

-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조문에서 지정한 특정 설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설비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여 공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내국법인)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조세특례는 모두 내국인(내국법인)에만 적용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음.
- 특별상각과 감가상각특례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없음.

〈표 II-1〉 적용설비별 분류

조세특례	대상자산	감면율	비 고 ¹⁾
임시투자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	특정업종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에 한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20%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설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상각기간 2년 이상)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상각기간 2년 이상)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상각기간 2년 이상)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의 경우 7%)	-

〈표 II-1〉의 계속

조세특례	대상자산	감면율	비 고 ¹⁾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축산물 등에 대한 위해요소방지시설 -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해외자원개발설비 - 광산보안시설 - 기술유출방지설비 -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투자금액의 3%	-
의약품품질관리 개선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산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선택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상각	2004년 6월 30일 이전 취득 혹은 투자 고정자산 한정

주: 1) 조특법상 조세지원 대상은 내국인에 한정함.

□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는 대체로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세액공제제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타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1) 현행 제도¹⁾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인장치로서 기업의 기계장치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액공제대상자

-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
-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투자의 범위

- 사업용 자산이 범위가 되며 사업용 자산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함.
 -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한정되므로 중고품에 대한 투자와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은 제외
 -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대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포함

1) 조세특례제한법 §26

□ 세액공제액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산출함.
- 현재 공제세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의 7%임.
- 2008년 12월 10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2009년까지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새로 허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3%,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에 따라 그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초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신규투자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일부 배제하도록 함.
- 조세감면의 배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한 중소기업의 그룹과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한 경우로 나뉨.
 - 첫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두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 조세감면을 배제함.
 - 증설투자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하고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함.

- 종전에는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기존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모든 투자를 대상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였음.
 - 그러나,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199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 199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투자를 대상으로 조세감면이 배제됨.

2) 제도 연혁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68년 처음으로 경기조절을 목표로 도입²⁾되었으며, 도입 이후 적용과 미적용을 반복해 왔음.
 - 도입 당시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 건설업과 같이 일부 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이후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 세액공제율도 6~10% 범위 내에서 확대 및 축소를 반복하였음.
 - 공제율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분, 국내산과 외국산에 대한 구분을 두기도 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법인세법 §24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표 II-2〉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연혁

적용/미적용 기간		적용대상	세액공제율
1차 적용(7년)	'68.1.1~'72.8.2	제조업, 광업, 수산업, 건설업	6%(0%)
	'72.8.3~'74.12.31		10%(8%)
미적용(5.5년)	'75.1.1~'80.6.30	-	-
2차 적용(2.5년)	'80.7.1~'81.3.31	제조업, 광업	10%(8%)
	'81.4.1~'81.12.31		10%(0%)
	'82.1.1~'82.12.31		10%(6%)
미적용(2.5년)	'83.1.1~'85.6.27	-	-
3차 적용(1.5년)	'85.6.28~'86.6.30	제조업, 광업	10%(3%)
	'86.7.1~'86.12.31		10%(3%)
미적용(2.5년)	'87.1.1~'89.6.30	-	-
4차 적용(5.5년)	'89.7.1~'90.6.30	제조업, 중소광업	10%(3%)
	'90.7.1~'90.12.31		10%(3%)
	'91.1.1~'91.12.31		10%(3%)
	'92.1.1~'92.6.30		10%(0%)
	'92.7.1~'92.12.31		10%(0%)
	'93.1.1~'93.12.31		7%, 중소10%(0%)
미적용(2.5년)	'94.1.1~'94.12.31	-	7%, 중소10%(0%)
5차 적용(3년)	'95.1.1~'97.6.2	-	-
	'97.6.3~'98.6.3	제조업	10%
	'98.7.1~'99.6.3	- 중소기업: 모든설비 - 대기업: 노후시설(내용연수 80% 이상) 개체투자	(국내외산 차등 폐지)
	'99.7.1~'99.12.31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추가 대기업: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98.8.10)	10%
	'00.1.1~'00.6.30	건설업,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22개 업종, '98.11.16)	7%
미적용(0.6년)	'00.7.1~'00.12.31	-	-
6차 적용(8년)	'01.1.1~'01.6.30	-	-
	'01.7.1~'01.12.31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 ('01.9.3)	10%
	'02.1.1~'02.6.30	25개 업종	
	'02.7.1~'02.12.31		
	'03.1.1~'03.6.30		
	'03.7.1~'03.12.31		15%
	'04.1.1~'04.6.30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추가(27개 업종)	15%
	'04.7.1~'04.12.31		15%
'05.1.1~'05.12.31	10%		
'06.1.1~'06.12.31	7%		
'07.1.1~'07.12.31			
'08.1.1~'08.12.31	분노치리업, 영화상영업 추가		

주: () 안은 외국산에 적용되는 공제율임

자료: 『투자(R&D)·설비 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발췌한 표에 수정하였음.

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 현행제도

□ 우리나라의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의 제10조~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의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제1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 2)가 있음.

□ 이 중 과세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에 대한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 속하는 세제는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임.

○ 그러나, 주요국의 세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비용지출과 설비투자를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인 제10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10조의 내용도 참고로 포함하여 살펴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도 있음.

- 중소기업인 경우 : Max(①, ②)

①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 15%

②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액 × 50%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①+②(단, 매출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과세연도의 비율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text{Max}(\text{①}+\text{②}, \text{③})$)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인력개발비 - 과거 4년간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50%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 과거 4년간 발생한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40%

③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text{Min}(6\%, 3\%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7%를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이 포함됨.

○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당해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이때 당해연도에 투자한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과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 제도 연혁

□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는 1974년 신기술기업화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 1981년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험연구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현행제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 따라서 지원대상 시설은 크게 신기술기업화자산, 시험연구시설, 직업훈련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1981년 이래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조세지원 방법은 도입 당시에는 세액공제방식에서 시작하여 1981년부터 1995년까지는 세액공제와 일시상각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오다 1996년부터는 일시상각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방식만 유지하고 있음.
- 세액공제의 경우 제도의 도입 시점에는 국내산에 대해 외국산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1997년부터 국내산과 외국산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제율은 5~10% 수준이며, 2002년 10%에서 7%로 인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동일한 공제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혁

연도	지원방법 및 대상자산	공제율
1974	신기술기업화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8%(국산 10%)
1981	세액공제와 일시상각 중 선택 적용 - 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자산, 시험연구시설, 직업훈련시설 - 일시상각	6%(국산 10%) 8%(국산 10%) 50% 상각
1982	- 일시상각: 연구시험용 시설	90% 상각
1986	- 일시상각: 외국산 신기술기업화자산·직업훈련용 시설 - 세액공제: 외국산 신기술기업화자산·직업훈련용 시설	30% 상각 3%
1990	- 세액공제: 사내직업훈련비	15%
1992	- 일시상각: 신기술기업화자산	50%(국산 90%)
1993	- 일시상각: 연구시험용 시설 - 세액공제: 외국산 연구시험용 시설	50%(국산 70%) 상각 5%
1996	- 일시상각제도 폐지	
1997	- 세액공제	5%(국산우대 폐지)
2001	- 세액공제	10%
2002~현재	- 세액공제(일몰기한 2009. 12. 31)	7%

다. 기타 설비투자 세액공제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 보호시스템설비를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투자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를 공제함.
 - 동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업³⁾으로서 중소기업법에서 제시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임.

2)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⁴⁾
 -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⁵⁾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⁶⁾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3)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공연산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포장 및 충전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 영업, 토양정화업, 영화산업

4) 구체적인 설비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5) 구체적인 설비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⁷⁾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⁸⁾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3)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⁹⁾.

○ 대상자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¹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 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¹¹⁾

4)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
-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
 -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
 -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
 - 9) 2000.12.29 신설
 - 10)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 11)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4> 참조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¹²⁾.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동 제도는 과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해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시설 등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음.

- 2003.12.30에 명칭이 ‘특정설비’에서 ‘환경 및 안전설비’로 변경되었고 대상자산은 환경보전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임.
- 2007.12.31. 부터는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을 ‘안

12) 명칭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환경 및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2003.12.3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2007.12.31)로 변경되었음.

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대상자산에서 환경보전시설을 제외 시킴.

5)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7.12.31.에 신설되었음.

○ 해당 조항이 2007년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환경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조항의 신설 이전에도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제율이 확대된 것임.

- 과거에 '환경 및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환경설비와 안전설비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오다가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고 환경설비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하였음.

○ 대상자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¹³⁾

-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¹⁴⁾

13)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5> 참조

1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7.12.31.에 신설되었음.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목적
 -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 대상자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함.

라. 설비투자관련 감가상각제도

1) 일반

- 일반적인 설비투자
 - 일반적인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5년, 8년, 10년, 12년, 20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이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5% 가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사용가능함.
 -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에는 별표6에서 10년 내용연수 그룹에 속하므로 해당 업계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10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가감하여 8년에서 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은 건물과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선택가능함.

□ 시험연구비 등에 대한 설비투자

○ 시험연구비 등에 대한 설비투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5년, 광학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설비에 대해서는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 즉시상각의제

○ 소액자산에 대해서는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이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경우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함.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이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함.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도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함.

2) 특별상각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 내국법인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단, 시험연구용자산은 일정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특례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치였음.

□ 특별상각

- 가속상각방법의 하나로 일반상각범위액에 대하여 특별상각범위액을 가산한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함.
- 199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감가상각제도의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되고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추가상각이 허용됨에 따라 가속상각제도의 존재 의미가 미미하여 특별상각제도를 폐지
- (구)특별상각제도를 설명하면 특정업종(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매 사업연도에 일반상각범위액에 특별상각범위액을 더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도액으로 함.
 -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 :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20%
 -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 :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30%
 -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 :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50%
 -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 :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20%

2. 설비투자관련 현황

가. 조세지출 현황

-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

- 1998년 약 649억원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약 4,3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 1조 8,000억원, 2006년에는 약 2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1999년에 약 1,6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00년에 400억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1999년 793억원에서 2004년까지 그 규모가 하락하였음.
 ○ 2007년 말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조항을 마련하고 세액공제율도 3%에서 7%로 크게 인상하였음.

〈표 II-4〉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조세지출항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시투자세액공제	649	1,153	4,388	7,025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18,247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224	1,671	400.3	411	219	524	531	351	511	46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79	291	259.4	382	186.5	158	110	268	55	6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010	2,025	2,890	1,946	526.6	477	548	303	281	394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¹⁾	685	793	705	435	107.5	165	84	144	112	12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²⁾	n.a.	n.a.	n.a.	102	159	465	230	232	283	676

주: 1) 2003년까지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수치임.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0.12.29 신설된 제도이므로 2000년 이전 조세지출 실적은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나. 설비투자 현황

□ 200대 기업 설비투자 연도별 추이

○ 지식경제부에서 2008.1에 조사한 자료로 2007년 200대 기업의 지난해 설비투자는 연초 계획보다 7.6% 축소조정하여 0.7% 증가에 그침.

○ 2008년의 설비투자는 2008년 상반기의 실적치와 하반기의 예상치를 합한 수치로 2008년 하반기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현재 발표되는 실적치는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실적치로 결과가 집계되면 예상치보다는 설비투자금액이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임¹⁵⁾.

〈표 II-5〉 200대 기업 설비투자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p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200대	30.3	18.8	37.8	24.8	46.7	23.5	51.8	10.9	52.1	0.7	62.5	19.9
제조업	20.9	32.3	28.2	34.9	35.7	26.6	37.9	6.2	35.8	△5.7	44.3	24.0
비제조업	9.4	△3.1	9.6	2.1	10.9	13.5	13.9	27.5	16.4	18.1	18.1	10.9

자료: 지식경제부, '08년 200대 기업 설비투자 전망, 2008.3

□ 중소제조업설비투자전망¹⁶⁾

- 기은경제연구소에서 2007.8에 조사한 자료로 중소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정리한 자료임.
- 조사대상업체 3,070개의 업체 중 설비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의 비중으로 2006년의 설비투자 예정업체의 비율이 39.5%에 비교하면 2007년의 설비투자 예정업체의 비율은 37.4%로 소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중기업이 소기업에 비하여 설비투자 예정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중소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수경기였고,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의한 경우는 제시된 요인 중 9위에 해당하였음.
- 조사대상업체가 설비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한 실태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활용한 업체는 31.8%였음.
 - 세부적으로 활용한 제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및개발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순이었음.

15)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중 설비·건설 투자액은 실질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어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2007년 증가율인 4.4%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됨. 또한 설비투자는 1~9월 중 2.3%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의 8.0%에 비해 크게 둔화

16) '2007년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 기은경제연구소, 2007.8의 내용을 인용정리함.

〈표 II-6〉 중소기업 설비투자 업체비율 추이

(단위: %, %p)

		2004년	2005년	2006년 (A)	2007년 전망			B-A(%p)
					상반기 (실적)	하반기 (전망)	소계(B)	
중소제조업		40.1	39.0	39.5	30.8	21.5	37.4	-2.1
규모	소 기업	35.1	34.8	35.3	26.9	17.6	33.6	-1.6
	중 기업	69.2	69.3	71.9	61.4	51.6	66.3	-5.6
산업	경 공 업	34.3	34.3	33.7	25.6	18.3	32.9	-0.8
	중화학공업	45.0	42.2	43.7	34.7	23.8	40.7	-3.0
형태	조립가공	41.9	38.9	44.1	33.9	23.5	40.0	-4.1
	기초소재	43.4	46.7	41.3	34.1	23.2	40.5	-0.8
	생활관련	33.3	32.4	32.9	24.9	17.9	31.9	-1.0

자료: 기은경제연구소, 「2007년도 중소기업 설비투자전망」, 2007.8

Ⅲ. 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1. 미 국

- 미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특별비용공제제도와 초년도특별상각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모든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없지만 특정설비를 대상으로 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지원제도는 연구개발비용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특별상각 및 특별비용공제는 사업용 상각자산에 대하여 구입 초년도에 한하여 추가적인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임.

가. 설비투자 지원제도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광범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제도는 없음.
 - 그러나 구체적인 특정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IRC §38에서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로서 31가지의 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세액공제액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합해져 당해연도 세액공제액이 됨.
 -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이므로 당해연도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¹⁷⁾.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년 소급공제와 20년 이월공제를 할 수 있음.

□ 31개의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 중 설비투자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
-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credit)
- 에너지효율화주택 세액공제(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 에너지효율화설비 세액공제(energy efficient appliance credit)
- 탁아시설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표 Ⅲ-1〉 미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대상자산	지원내용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¹⁾	- 1936년 이전에 설립된 적격재건건물	- 적격재건비용의 10% 세액공제 · 역사적 건물: 20%
에너지세액공제 ¹⁾	- 적격한 연료전지설비, 태양에너지난방설비, 태양에너지조명설비 - 기타에너지설비	- 과세기준금액의 30% 세액공제 - 과세기준금액의 10% 세액공제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¹⁾	- IRS가 승인한 석탄가스복합발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투자액의 20% 세액공제 -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가스화사업세액공제 ¹⁾	- IRS 승인한 석탄가스화설비	- 투자액의 20% 세액공제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 저유황디젤연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시설 및 기존시설의 재건설비용	- 저유황연료 갤런당 5센트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 대상자: 에너지효율화주택제조업자 - 에너지효율화주택	- 에너지절약 정도에 따라 주택당 \$1,000/2,000 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제품세액공제	- 대상자: 가정용품 제조업자 - 에너지효율화가전제품	- 과거 3년 평균매출액의 2%
탁아시설세액공제	- 납세자가 보유하고 탁아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의 취득 및 운영비용	- 관련 비용의 25%, 한도액은 \$150,000

주: 1) 투자세액공제

17) general business credit 중 work opportunity credit, alcohol fuels credit, empowerment zone employment credit, renewable electricity credit, FICA tip credit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1) 투자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는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월 공제 한도금액의 적용을 받음.
 - 파트너십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은 파트너십의 일반적 인 이익분배 비율에 따라 파트너들에게 배분됨.
 - S corporation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은 각 주주의 소유 지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주주에게 배분됨.
 - estate나 trust의 투자세액공제 자산에 대해 허용되는 투자세액공제 금액은 estate 및 trust와 배분될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혜자에게 분배됨.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란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 에너지세액공제(energy credit),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advanced clean coal project credit), 가스사업세액공제(qualified gasification project credit)¹⁸⁾의 4가지 유형의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것임.

가)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

-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는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적격재건비용과 1936년 이전에 설립된 적격재건비용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1936년 이전에 설립된 적격재건건물(QRB: Qualified Rehabilitated Building)의 적격재건비용(QRE: Qualified Rehabilitation Expense)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적격재건비용의 경우에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적격재건건물(QRB)이란 세액공제 과세연도에 실질적인 재건이 이루어졌고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건물 및 구조물을 의미함.

18) IRS Form 3468 Investment Credit

나) 에너지세액공제(energy credit)

□ 에너지세액공제(energy investment credit)는 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적절한 연료전지(fuel cell) 설비,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방설비,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이 시작된 설비의 과세기준금액(basis)에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그 외의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이 시작된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적격 에너지 설비 과세기준금액(basis)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 적용대상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납세자가 건축 및 조립 또는 최초로 구입한 자산이어야 함.
-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다)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advanced clean coal project credit)

□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는 2005.8.8.부터 투자세액공제의 하나로 포함되었음.

○ 동 세액공제는 IRS가 Secretary of Energy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로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납세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당해 연도에 IRS가 승인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0%
- IGCC 외의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적격투자액의 15%

라) 가스화사업 세액공제(qualified gasification project credit)

-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clean coal project credit)와 마찬가지로 2005.8.8.에 투자세액 공제에 포함되었으며 석탄 가스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고자 도입되었음.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적절한 석탄 가스화 설비에 대하여 연간 투자액의 20%로서 세액공제 한도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제한함.
 -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05.10.1.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기간 내에 IRS의 승인(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2)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credit)

- 소규모 정제업자는 저유황디젤연료 생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적절한 시설에서 생산된 저유황연료 갤런당 5센트임.
 - 적용대상 소규모기업이란 근로자가 1,500명 미만이고 일 평균 정제량이 205,000배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에는 새로운 공정 설치를 위한 비용, 기존에 저유황디젤연료 생산에 사용되었던 공정시설의 분해 및 재건설 비용 등임.

3) 에너지효율화주택 세액공제(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 2009년 이전에 거주용으로 에너지효율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제작된 주택에 대해 \$1,000 또는 \$2,000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는 에너지효율화주택 제조업자이고 적용대상주택은 미국 내에 위치해 있고 2005.8.8.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 연간 난방 및 냉방 비용이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액의 10% 이상이 건물로 인한 것이어야 함.

4) 에너지효율화제품 세액공제(energy efficient appliance credit)

-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에너지효율화 가정용품 제조업자에게 허용되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금액은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의 2%임.
 - 세액공제금액은 당해연도에 적격한 에너지효율화제품 각 유형별로 계산하여 합산함.

5) 탁아시설 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 고용주가 제공하는 탁아시설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적격탁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25%이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150,000임.
 - 적격 탁아시설 관련비용
 - 납세자의 적격탁아시설로 사용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축, 재건, 확장 비용 및 적격 탁아시설의 운영비용

나. 감가상각제도

1) 일반원칙

-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비용(\$179비용) 공제금액과 초년도특별상각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함.
 - 1986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에 따라 상각하도록 하고 있음.
 - MACRS에서는 200%정률법(200% declining balance)에 의한 일반상각방식(GDS: General Depreciation system)과 150%정률법(150% declining balance)에 의한 대체상각방식(ADS: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중 선택적으로 적용함.

○ GDS는 자산을 내용연수별로 9가지 유형(3, 5, 7, 10, 15, 20, 25, 27.5, 39년)으로 구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200%정률법과 150%정률법, 정액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내용연수가 27.5년인 거주용 임대자산과 39년인 비거주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적용함.

- 내용연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사무용품, 실험연구용품 등은 5년, 사용가구, 농기계 등은 7년, 선박 등은 10년, 농장건물은 20년임.

□ 미국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적인 200%정률법 또는 150%정률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특별비용공제와 초년도특별상각과 같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음.

○ 감가상각비의 산출은 ① 특별비용공제, ② 초년도특별상각, ③ 당기 감가상각비의 순서로 이루어짐.

○ 따라서 당기 구입한 자산의 경우 특별비용공제와 초년도특별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당기 감가상각률을 적용함.

○ 감가상각제도의 전체적인 개요는 <표 Ⅲ-2>와 같음.

<표 Ⅲ-2> 미국의 감가상각제도 개요

	대상자산	공제율/공제액	적용요건
특별비용공제	사업용 상각자산	공제한도액: \$250,000 ¹⁾	투자액 \$800,000 미만 ²⁾
초년도특별상각 ³⁾	내용연수 20년 미만의 유형자산, 수도시설, 컴퓨터소프트웨어	50%	2007~2009 기간에 구입하고 해당기간에 사용이 시작된 자산
일반 감가상각	- 컴퓨터, 사무용품, 실험용품 등의 감가상각자산 - 건물	- 200%정률법, 150%정률법 - 정액법	-

주: 1)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따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액 증가되었고 2011년부터는 \$25,000이 적용될 예정임.

2) \$800,000 초과시 공제액 감소함.

3)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따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초년도특별상각

□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첫해에 추가적인 감가상각이 허용됨.

- 감가상각 금액은 대상자산 기준금액의 50%이고, 기준금액이란 특별비용공제(\$179 비용) 적용 후의 금액을 말함.

□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의 요건

- 내용연수가 20년 미만이고 수정가속상각제도(MACRS)에 의해 상각하는 유형자산
- 수도시설 장비
- 출하대기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적격한 임차시설개량권(leasehold improvement property)

□ 적격한 자산은 다음의 요건도 만족해야 함.

- 2007년 이후부터 2009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구입한 적격한 자산이어야 하며, 만일 2008년 이전에 있던 자산의 취득계약과 관련이 있다면 그 자산은 적격하지 않음.
- 해당 적격자산은 2007년 이후부터 2009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 용도 사용이 시작되어야 함(특정 교통시설과 제작기간이 장기간인 자산은 2010년 이전까지 사용이 시작되어야 함).

□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자산의 사용이 시작된 시기와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가 동일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자산
-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사업용 자산에서 개인용도 자산으로 용도가 전환된 자산
- 대체상각제도(ADS: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에 의해 상각해야 하는 자산

□ 현행 특별공제는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의해 2008년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초년도 특별공제가 있었음.

- 2001.9.10 ~ 2004.9.11 기간에는 30% 초년도 특별상각을 허용하였고 2003.5.5 ~ 2004.12.31 기간에는 50% 초년도 특별상각을 허용한 바 있음.

3) 특별비용공제

□ 특별비용공제란 해당기업이 선택에 의해 사업용 상각자산 구입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용으로 공제하는 제도임(IRC §179).

- 공제액은 2007년의 경우 125,000달러였으나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의해 2008년 공제 한도액은 250,000달러로 증가하였음.
 - §179 비용공제 한도액은 2002~2010년 기간 동안 \$100,000에서 매년 물가상승에 의한 조정을 한 후 2011년에는 25,000달러로 다시 인하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포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담고 있는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이 2008.2.3에 통과됨에 따라 2008년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qualified enterprise zone 등의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2008년 공제액이 285,000달러 임.
- 총투자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Phase-out rule에 따라 비용공제 금액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2007년의 경우 총유형자산 구입비용의 기준금액이 \$500,000였고 2008년의 경우 \$800,000임.
 - 따라서 새로운 2008년도 규정에 의하여 250,000달러의 비용공제를 받으려면, 총유형자산 구입비용이 8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별비용(§179 비용) 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도로 매입한 기계장치
-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 컴퓨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 사무용 가구와 사무용 설비
- 건물에 부속하는 기계설비(printing press, large manufacturing tools and equipment)

○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 사업용도 부분만을 공제대상으로 함.

□ 특별비용(\$179 비용) 공제 제외 자산

- 토지, 건물, 영구적 시설물 등의 부동산(수영장, 주차장, 교량, 울타리 등)
- 공제대상 자산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타인에게 대여한 자산
 - 숙박시설의 제공과 관련된 자산
 - 에어컨디션 및 난방 시설
 - 미국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산
 - 비과세단체가 사용하는 자산
 - 정부단체,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사용하는 자산(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리스한 자산은 제외)
 - 증여 및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

□ 산출사례

- \$400,000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초년도특별상각과 특별비용공제를 통한 세금 감소액의 산출 사례
 - 매입액에서 2008년도 특별비용공제 \$250,000를 차감하고 특별비용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150,000의 50%인 \$75,000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75,000가 됨.
 -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연간 20%씩 상각한다면 당해연도 상각액은 \$15,000임.
 - 총감가상각액은 \$340,000이고 세율을 35%로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 및 특별비용공제로 인한 세금 절감액은 \$119,000가 됨
 - 따라서 \$400,000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초년도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세금절감액을 차감한 \$281,000라고 할 수 있음.

유형자산 매입액	\$400,000
특별비용공제액(2008년)	- 250,000
초년도특별상각액	- 75,000
<u>당해연도 감가상각액</u>	<u>- 15,000</u>
초년도 총감가상각액	340,000

다. 연구개발투자 지원제도

-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소득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는 일반사업비용공제의 한 항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일반사업비용공제금액과 합산되어 1년의 전기이월과 20년의 차기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 세액공제 금액은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적격연구개발비의 20%, 기초연구비용의 20%, 에너지연구컨소시엄에 지출한 금액의 20%의 합계액임¹⁹⁾.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적격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직접 수행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직접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비용은 연구활동을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활동에 사용된 물품비용을 포함함.
 - “계약연구개발비”는 적격연구를 위해 납세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의 65%만을 적격연구개발비에 포함함.

-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비는 자본적 지출

19) IRC §41

에 대하여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함.

- 처음 연구개발비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연도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만일 처음 연도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 IRS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개발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60개월에 걸쳐 정액상각할 수 있음.

□ 세액공제금액의 산출방식은 일반적인 세액공제방식, 대체적인 증가분세액공제방식, 대체적인 단순세액공제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별도의 선택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세액공제액을 산출하게 되며, 대체적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신고시 선택해야 함.

□ 일반적인 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세액공제액 산출방법

- 당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은 기준금액(base amount) 초과분과 당기 적격연구개발비의 50% 중 작은 금액의 20%임.

세액공제액 = Min [당기적격연구개발비 - 기준금액, 당기 적격연구개발비의 50%]

- 기준금액이란 직전 4년의 평균 매출액에 적용비율²⁰⁾을 곱하여 산출됨.

- 적용비율은 1984.1.1~1988.12.31 기간의 총매출 대비 적격연구개발비 비율이며 16%를 한도로 함.

□ 대체적인 증가분 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산출방법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1996년도부터는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세액공제산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직전 4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다음 3단계에 거쳐 산출된 금액의 합이 세액공제 금액임.

- 기준금액의 1% 초과 1.5% 이하인 적격연구개발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의 1.5% 초과 2% 이하인 적격연구개발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의 2%를 초과하는 적격연구개발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0) IRS §41

$$\text{세액공제액} = \text{①} + \text{②} + \text{③}$$

$$\text{① } 3\% \times [(\text{기준금액} \times 1.5\%) - (\text{기준금액} \times 1\%)]$$

$$\text{② } 4\% \times [(\text{기준금액} \times 2\%) - (\text{기준금액} \times 1.5\%)]$$

$$\text{③ } 5\% \times [\text{당해연도 적격연구개발비} - (\text{기준금액} \times 2\%)]$$

- 대체적인 단순세액공제방식은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에 의해 새로 도입된 것으로 2006.12.31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두 가지 산출방식에 비해 상당히 간단함.
 - 과거 3년 동안의 적격연구개발비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의 12%를 세액공제액으로 하는 방식임.
 - 과거 3년 기간 중 적격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공제율은 6%로 인하됨.

2. 영국

가. 설비투자 지원제도

- 영국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없음.
 -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capital allow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자산 및 산업에 대하여 자본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세무상 효과는 감가상각 또는 특별상각과 동일하므로 감가상각제도에서 소개하고 이후에서는 특별상각 혹은 감가상각으로 용어를 통일함.

나. 감가상각제도

1) 일반원칙

□ 1997년 특정 자산 및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상각(Capital Allowance)제도를 도입하였음.

- 특별상각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년 일정비율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임.
-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인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공제율은 25%이었으나 2008.4.6. 부터 적용공제율이 20%로 인하되었음.
- 자산 유형별 상각률
 - 설비 및 기계: 20%
 - 산업용 건물 4%(enterprise zones은 25%)
 - 농업용 건물: 4%

□ Capital Allowance Act 2001은 특별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계설비와 감가상각에 포함되는 지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²¹⁾.

- 감가상각 대상 설비에서 제외되는 자산
 -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산
 - 수명이 2년 이하인 자산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
- 감가상각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지출
 - 사업자에 의해 점유된 건물에 대한 소방관련 규제를 따르기 위한 장비에 대한 지출
 - 산업용 건물의 열 차단장치 구비를 위한 지출
 - 운동장에 대한 법정 안전성 요구를 따르기 위한 지출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2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2004.

2) 가속상각제도

- 일반적인 감가상각 상각률과는 별도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의 경우 구입 첫해에 40% 또는 100% 등의 감가상각을 허용함.
 - 초년도감가상각(FYAs: First-year allowance)의 감가상각률은 자산의 유형이나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

- 100% 초년도감가상각
 - 특정 설비에 대하여 초년도에 100%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제도가 2001.4.1. 도입되었으며, 적용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절약 설비에 초년도 50,000파운드 이상 지출한 경우
 - CO₂ 배출저감 차량
 -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
 - 환경보전을 위한 설비
 - 2001.5.11부터 자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건물의 리노베이션 등을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100% 상각함.
 - R&D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100% 상각이 가능함.
 - 2000.4.1~ 2004.3.31 기간에 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에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100% 초년도감가상각을 적용하였음.
 - 정보통신기술 지출이란 컴퓨터와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이동전화 등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 40% 초년도 감가상각
 - 중기업이 설비 및 기계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투자액의 40%를 첫해에 공제할 수 있음.
 - 소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50%임.
 - 자동차, 장기내용연수자산, 설비 및 기계의 리스에 대한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됨.

〈표 Ⅲ-3〉 영국의 감가상각제도 개요

		대상자산 및 상각률	대상기업
일반상각		- 설비 및 기계: 20%(2008-09년 20%) - 산업용 건물: 4% - enterprise zones의 산업용 건물: 25%	모든 기업
특별상각	초년도 40% 상각	- 설비 및 기계: 40%	중기업
		- 설비 및 기계: 50%	소기업
	초년도 100% 상각	- 에너지절약 설비 및 기계에 초년도 50,000파운드 이상 지출, CO ₂ 배출저감 차량,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 환경보전을 위한 설비	모든기업
		건물의 리노베이션	모든기업
		R&D에 대한 자본적 지출	모든기업
	정보통신기술 지출	소기업 ¹⁾	

주: 1) 적용기간: 2000.4.1~ 2004.3.31

다. 연구개발투자 지원제도

□ R&D 관련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100% 초년도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경상비 지출에 대해서는 125%(중소기업 15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 따라서 연구개발 관련 지출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특별감가상각과 소득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짐.

- 즉, 자본적 지출은 조기상각하는 방식이고 경상비 지출은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임.

□ R&D의 정의

○ Finance Act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R&D로 처리된 모든 활동을 R&D로 정의하고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R&D 활동의 범위에 포함함.

-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나 기존의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적·이론적 활동 등
- 그러한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의 테스트 및 평가 활동
- 시제품의 테스트, 디자인, 설계
- 시제품의 제작 및 운영

□ R&D 비용 소득공제

○ R&D관련 당기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지출액의 125%, 중소기업은 1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R&D 지출의 150%까지 소득공제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R&D 지출액에 추가적으로 50%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기준은 연매출액 5,000만파운드 이하 또는 자산합계 4,300만파운드 이하이고 종업원 수 250인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임.
- 150% 소득공제를 하려면 적격연구개발비가 10,000파운드를 초과하여야 함.
- 과세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payable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음.

○ R&D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출
-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 지원되는 직원에 대한 지출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지출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연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3. 일본

□ 일본에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는 크게 두 가지임.

○ 첫째는 감가상각제도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임.

- 감가상각과 관련된 제도는 ① 250%정률법, ②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특례가 있음.

-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은 특정설비투자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있음.

- 감가상각제도와 관련이 있는 250%정률법 및 특정설비투자자에 대한 감가상각특례를 같이 검토하고, 특별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그 외의 특별세액공제로 나누어서 검토함.

□ 관련 법의 구조

- 첫째 감가상각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250%정률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²²⁾에 규정되어 있고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특례는 조세특별조치법에 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별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별조치법에 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정설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정액을 한도로 특정 경비나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 감가상각특례는 통상보다 많은 상각비를 계상가능하도록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비용화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고정자산의 진부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특별상각은 상각한도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특별상각과 할증상각으로 구분됨.
 - 특별상각은 통상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만 적용

$$\text{특별상각액} = \text{고정자산의 취득가액} \times \text{특별상각률}$$
 - 할증상각은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했던 사업연도부터 일정기간에 적용됨.

$$\text{할증상각액} = \text{보통상각한도액} \times \text{할증률}$$
- 특별상각의 대상은 대상자산, 대상법인, 적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청색신고법인이어야 함.
 - 특별상각의 명세서를 확정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함.
 - 복수의 특별상각규정을 중복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22) 法令48の2⑤, 所令120の2②

-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한 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공제와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가. 감가상각제도

1) 일반원칙

□ 설비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분류에서 '건물 이외의 유형감가상각자산'에 속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정률법으로 함.

□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상당액을 사업에 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① 사용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취득가액이 10만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이나 농업협동조합 등인 청색신고법인이 2003.4.1부터 2008.3.31까지의 기간에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이 30만엔 미만인 소액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300만엔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은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특별조치가 있음²³⁾.

○ 일괄상각자산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자산으로 취득가액이 20만엔 미만인 것(자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을 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자산의 전부나 특정 일부를 일괄한 취득원가를 해당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비용이나 손실로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 상각자산에 대해서 다음의 산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text{일괄상각대상액} = \text{취득가액} \times \text{해당사업연도의 월수}/36$$

○ 일본은 2007년에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잔존가액 및 상각가능한도액 폐지, 정률법

23) 조세특별조치법 제67의 5조

에 대한 상각률 수정, 법정내용연수의 수정 등 개정이 있었음.

- 특히 정률법에 대한 상각률을 수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속상각법을 채택한 것임.
- 당시 수정된 정률법의 내용
 - 감가상각방법 중 정률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의 2.5배로 감가상각비를 계산(250%정률법)하여 상각이 가능하도록 수정
 - 정액법을 채택하면 법정내용연수 경과 시점에서 취득가액이 전부 상각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정률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법정내용연수 경과 시점에는 취득가액이 전부 상각되도록 함.
 - 따라서 정률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일정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대체해서 감가상각함.
 - 여기서 일정액이란 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공제한 기간 내에 해당 장부가액을 균등상각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
 - 변경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4〉 일본의 감가상각방법 개정내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상각가능한도액(잔존가액)	상각방법
2007년 3월 31일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95%상당액(5%상당액)을 상각 •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에 도달하면 상각불능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액법, (구)정률법, (구)생산량비례법 등 • (구)정률법 상각률 계산시 잔존가액은 10%로 계산
2007년 4월 1일 이후	잔존가액 1엔을 남기고 전액 상각가능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주: 1) 예전규정에 의하면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에 도달하면 상각이 불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 전액상각(1엔 제외)이 가능함에 따라 2007년 3월 31일 이전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에 도달하면 도달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이 가능하도록 함. 이 때의 일정기간은 상각을 행한 사업연도의 월수/60로 계산

- (구)정률법과 250%정률법의 비교
 - 250%정률법은 (구)정률법과 비교하여 조기에 가속하여 상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250%정률법에 의한 상각: 취득가액이 100억엔, 내용연수 10년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250%정률법에 의하면 상각률은 25%(1/10×2.5)임.

〈표 III-5〉 250%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계산

(단위: 억엔)

경과연수	당기말 장부가액	당기계상 감가상각비
1	75.0	25.0
2	56.3	18.8
3	42.2	14.1
4	31.6	10.5
5	23.7	7.9
6	17.8	5.9
7	13.3	4.4
8	8.9	4.4
9	4.4	4.4
10	0.0	4.4

주: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부가액인 13.3에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8차연도의 상각액은 3.3이되는데 비하여 남은 잔존연수인 3년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8차연도의 상각액이 4.4가 되므로 8차연도부터는 정액법으로 균등상각

- 아래의 표는 기존의 정률법과 250%정률법에 의한 상각을 비교한 표인데, 비교표를 보면 3년까지의 초기 감가상각비가 기존정률법에 의할 경우 50억엔이었던 것에 비하여 250%정률법에 의할 경우 57.9억엔이 되어서 약 8억엔 정도의 초기 감가상각이 가능하였음.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40%라고 하는 경우에 약 3억엔의 초기 현금흐름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음.

〈표 Ⅲ-6〉 기존의 정률법과 250%정률법의 비교

(단위: 억엔)

경과연수	기존정률법 ¹⁾		250%정률법	
	당기말 장부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당기말 장부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1	79.4	20.6	75.0	25.0
2	63.0	16.4	56.3	18.8
3	50.1	13.0	42.2	14.1
4	39.7	10.3	31.6	10.5
5	31.6	8.2	23.7	7.9
6	25.1	6.5	17.8	5.9
7	19.9	5.2	13.3	4.4
8	15.8	4.1	8.9	4.4
9	12.5	3.3	4.4	4.4
10	10.0	2.6	0.0	4.4
11	7.9	2.1	-	-
12	6.3	1.6	-	-
13	5.0 ²⁾	1.3	-	-
14	5.0	0.0	-	-
15	5.0	0.0	-	-
16	0.0	5.0 ³⁾	-	-
	합계	100.0	합계	100.0

주: 1) 기존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20.6%이고 정률을 계산하기 위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 임.

2) 13년도에 상각가능한도액인 95%에 도달하여 5%의 잔존가액만 남게 되었고 이후에는 상각이 불가능함.

3) 설비를 제거하는 때, '제거손'으로 하여 잔존가액을 비용처리 가능

2) 특별상각제도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특례조치로서 250%정률법 외에 감가상각특례가 있음.

○ 이는 조세특례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와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특례 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조치임.

특별상각은 23종류의 제도로 구분되어 있음.

○ 특별상각대상자산 등에 대한 내용은 <표 Ⅲ-7> 참고

- 특별상각의 적용을 받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한도액 내에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특별상각부족액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조치법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나 할증상각을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비를 계상하는 대신에 각종 특별상각대상 자산별로 특별상각한도액 이하의 금액을 특별상각준비금으로 적립한 때에는 해당 적립금을 손금으로 산입함.
- 감가상각대상자산이 2 이상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중에서 1개만을 적용함.

<표 Ⅲ-7> 일본의 특별상각

제도명	관련조항	상각한도액(D)= 일반상각액(N)+특별상각분	적용기간
집적구역에 대한 집적산업용 자산의 특별상각	조법 44의 2조	$D=N+\text{취득가액} \times 15/100$	1999.4.1~2009.3.31
사업혁신설비의 특별상각	조법 44의 3조	$D=N+\text{취득가액} \times 20/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30/100$ 인 경우도 있음)	2003.4.9~2009.8.6
특정전기통신설비 등의 특별상각	조법 44의 4조	$D=N+\text{취득가액} \times 5/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10/100$ 나 취득가액 $\times 15/100$ 인 경우도 있음)	2003.4.1~2008.3.31 (설비별로 2003.4.1~2010.3.31)
공동이용시설의 특별상각	조법 44의 5조	$D=N+\text{취득가액} \times 8/100$	1991.8.1~2009.3.31
재상품화설비 등의 특별상각	조법 44의 6조	$D=N+\text{취득가액} \times 23/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14/100$ 인 경우도 있음)	1996.4.1~2008.3.31
특정지역에 대한 공업용 기계 등의 특별상각	조법 45조	$D=N+\text{취득가액} \times 10/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34/100$ 나 취득가액 $\times 50/100$, 취득가액 $\times 8/100$ 인 경우도 있음)	1986.4.1~2009.3.31 (설비별로 1993.4.1~2009.3.31, 1997.4.1~2012.3.31)

〈표 Ⅲ-7〉의 계속

제도명	관련조항	상각한도액(D)= 일반상각액(N)+특별상각분	적용기간
의료용 기구 등의 특별상각	조법 45의 2조	$D=N+취득가액 \times 14/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20/100$ 이나 취득가액 $\times 50/100 \times 15/100$, 취득가액 $\times 8/100$ 인 경우도 있음)	1979.4.1~2009.3.31 (설비별로 2003.4.1~2009.3.31, 2007.4.1~2009.3.31, 2001.4.1~2009.3.31)
경영기반강화계획을 실시하는 지정중소기업자의 기계 등의 할증상각	조법 46조	$D=N+(N \times 27/100)$	2002.4.1~2012.3.31
에너지수급구조개혁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상각	조법 42의 5조	$D=N+취득가액 \times 30/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50/100 \times 30/100$ 인 경우도 있음)	1992.4.1~2008.3.31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상각	조법 42의 6조	$D=N+취득가액 \times 30/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75/100 \times 30/100$ 인 경우도 있음)	1998.4.1~2008.3.31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특별상각	조법 42의 7조	$D=N+취득가액 \times 30/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35/100 \times 30/100$ 인 경우도 있음)	1989.9.1~2009.3.31 (설비별로 1987.4.1~2009.3.31, 1997.4.1~2009.3.31, 2003.4.1~2009.3.31, 2007.6.29~2009.3.31)
오키나와 특정 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조법 42의 10조	$D=N+취득가액 \times 34/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20/100$ 인 경우도 있음)	2002.4.1~2012.3.31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상각	조법 42의 11조	$D=N+취득가액 \times 70/100 \times 50/100$	2003.1.1~2008.3.31
특정설비 등의 특별상각	조법 43조	$D=N+취득가액 \times 14/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16/100$ 인 경우도 있음)	재무성 고시에 의해 결정된 기간
관서문화학술연구지방의 문화학술연구지역에 대한 문화학술연구설비의 특별상각	조법 43의 2조	$D=N+취득가액 \times 24/100$	연구도시법의 건설 계 획 동 의 일 부 터 2007.3.31
보전사업 등 자산의 특별상각	조법 43의 3조	$D=N+취득가액 \times 11/100$	1991.4.1~2009.3.31

〈표 III-7〉의 계속

제도명	관련조항	상각한도액(D)= 일반상각액(N)+특별상각분	적용기간
지진방재대책용 자산의 특별상각	조법 44조	$D=N+\text{취득가액} \times 8/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10/100$ 인 경우도 있음)	1987.4.1~2009.3.31 (설비별로 2006.4.1~2008.3.31)
의료용 기구 등의 특별상각	조법 45의 2조	$D=N+\text{취득가액} \times 14/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20/100$ 이나 취득가액 $\times 50/100 \times 15/100$, 취득가액 $\times 8/100$ 인 경우도 있음)	1979.4.1~2009.3.31 (설비별로 2003.4.1~2009.3.31, 2007.4.1~2009.3.31, 2001.4.1~2009.3.31)
경영기반강화계획을 실시하는 지정중소기업자의 기계 등의 할증상각	조법 46조	$D=N+(N \times 27/100)$	2002.4.1~2012.3.31
장애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계 등의 할증상각	조법 46의 2조	$D=N+(N \times 24/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취득가액 $\times 15/100$ 나 취득가액 $\times 40/100 \times 20/100$, 취득가액 $\times 20/100 \times 20/100$ 취득가액 $\times 20/100$ 인 경우도 있음)	1973.4.1~2009.3.31 (설비별로 1998.4.1~2008.3.31)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의 할증상각	조법 46의 3조	$D=N+(N \times 20/100)$	2007.4.1~2009.3.31
우량임대주택의 할증상각	조법 47조	$D=N+(N \times 36/100)$ (설비별로 특별상각분이 $N \times 28/100$)	2006.8.22~2008.3.31 (설비별로 2001.8.5~2009.3.31)
특정재개발건물 등의 할증상각	조법 47의 2조	$D=N+(N \times 10/100)$	1985.4.1~2009.3.31
창고용 건물 등의 할증상각	조법 48조	$D=N+(N \times 10/100)$	1974.4.1~2009.3.31
식림비의 손금산입의 특례	조법 52조	식림비 $\times 35/100$	1983.4.1~2009.3.31

나. 연구개발관련 세제²⁴⁾

□ 연구개발세제는 ‘시험연구비의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시험연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의 4가지임.

24) IBFD 및 일본국세청의 자료를 재정리

- 시험연구비의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색신고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한 시험연구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험연구비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는 청색신고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특별시험연구비가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는 중소기업자인 청색신고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시험연구비가 있는 경우에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적용하고 해당 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시험연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제도는 청색신고법인이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해당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액을 초과하거나 기준시험연구비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시험연구비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 이 제도는 청색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청산 중인 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 적용가능
- 시험연구비 총액
 - 제품의 제조나 기술의 개량, 고안이나 발명에 대한 시험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외에 다른 자에게 시험연구를 위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 시험연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시험연구비가 됨.
 - 여기서 시험연구는 공학적·자연과학적인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공업화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의 제조나 기존의 기술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도 대상이 됨. 그러나 제품의 제조나 기술의 개량, 고안이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²⁵⁾.

○ 세액공제한도액

- 세액공제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시험연구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를 초과하거나 기준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에 세액공제비율을 곱한 금액과 시험연구비로부터 비교시험연구비를 공제한 잔액에 5%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한도액으로 함.
 - 증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공제에 해당하지만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에서 증액부분과 비교하기 위하여 여기에 포함하였음.
- 세액공제비율은 10%이고 시험연구비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 세액공제비율이 됨.

$$\text{세액공제비율}(10\% \text{ 미만 경우}) = (\text{시험연구비비율} \times 0.2) + 8\%$$
- 시험연구비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를 해당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평균매출금액으로 나눈 비율임.
- 비교시험연구비는 적용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손금액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액을 평균한 금액임.
- 기준시험연구비는 적용연도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하는 시험연구비의 액 중 가장 많은 비용임.
-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세액공제한도액이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1년 이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

25) 일본국세청 자료 참조

□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 이 제도는 청색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청산 중인 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 적용가능

○ 특별시험연구비

- 시험연구비 중에서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공동으로 행한 시험연구,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한 시험연구, 해당 용도에 대한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에 관한 시험연구 등에 관련되는 시험연구비를 말함.
- 시험연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시험연구비가 됨.

○ 특별연구세액공제 한도액

- 특별연구세액공제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특별시험연구비에 특별연구세액공제비율(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2006.4.1부터 2008.3.31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를 초과하고 기준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시험연구비에서 공제한 금액(즉, 비교시험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특별연구세액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특별연구세액공제한도액이 됨.
- 특별연구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특별연구세액공제한도액이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1년 이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
- 비교시험연구비나 기준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한정의와 동일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 이 제도는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이나 농협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청산 중인 사업연도,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 적용가능

- 여기서 중소기업은 ① 자본금 기준과 ② 상시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임.

① 자본금 기준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으로 하나의 대규모법인이 해당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나 총액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2 이상의 대규모법인이 해당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나 총액의 2/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종업원 기준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 중 상시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법인임.

○ 시험연구비에 대한 정의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한 정의와 동일

○ 중소기업자 등 세액공제한도액

- 중소기업자 등 세액공제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시험연구비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2006.4.1부터 2008.3.31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를 초과하고 기준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에 12%를 곱한 금액과 시험연구비에서 비교시험연구비를 공제한 잔액에 5%를 곱한 금액이 중소기업자 등 세액공제한도액이 됨.

- 특별연구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특별연구세액공제한도액이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1년 이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

- 비교시험연구비나 기준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한 정의와 동일

□ 시험연구비액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제도

○ 이 제도는 청색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청산 중인 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

○ 시험연구비, 비교시험연구비, 기준시험연구비, 평균매출금액에 대한 정의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한 정의와 동일

○ 세액공제한도액

-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비의 일정비율

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해당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액을 초과하거나 기준시험연구비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한도액이 됨.
- 해당 시험연구비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부터 평균매출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초과세액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세액공제한도액이 됨. 이 때, 초과세액공제비율은 시험연구비 비율에서 10%를 공제한 비율에 0.2를 곱하여 계산한 비율임.
- 시험연구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시험연구비가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투자관련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세제를 살펴보면 각 세액공제의 기초가 되는 시험연구비 등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

- 각 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시험연구비인데, 시험연구비의 대상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원재료, 인건비, 경비를 포함하고 있음.
- 경비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당기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설비투자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산정

다. 기타 설비관련 세액공제

- 에너지-수급구조개혁유지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조의 5조)
-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조의 6)
-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조의 7)

- 정보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의 11)
- 앞서 언급된 세액공제 이외에 오키나와 지역에서 공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조의 9), 오키나와의 특정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이나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조의 10), 교육훈련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법인세액의 특별공제(특별조치법 42의 12)가 있으나, 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설비자산이 아닌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하였음.

〈표 Ⅲ-8〉 기타의 세액공제

제도명	관련조항	특별공제	적용기간
에너지수급구조개혁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조법 42의 5조	취득가액의 7%	1992.4.1~2008.3.31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조법 42의 6조	취득가액의 7%	1998.6.1~2008.3.31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조법 42의 7조	취득가액의 7%	1989.9.1~2009.3.31
오키나와 특정 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공제	조법 42의 10조	취득가액의 15%	2002.4.1~2012.3.31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공제	조법 42의 11조	취득가액의 10%	2006.4.1~2008.3.31

1) 에너지-수급구조개혁유지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세액공제 및 특별공제²⁶⁾

□ 제도의 개요

- 1992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에너지 유효이용설비, 석유대체 에너지 이용설비 등, 전기공급안정화설비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기준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거나 기준취득가액의 7%를 세액공제 선택 가능

26) DHC會社稅務釋義, 第一法規

- 당기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의 이월공제 인정
- 7%의 특별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 등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소유권이전 리스거래에 따라 취득한 에너지수급구조 개혁추진설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상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취득원가는 전기·가스수요평균화설비 및 전기공급안정화설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의 50% 상당액,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함.

□ 적용대상자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이거나 자본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으로 함.

□ 적용대상설비

- 구체적인 대상설비를 1992년 3월 31일 대장성고시 제57호 별표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
- 대략적으로는 에너지 유효이용설비, 석유대체에너지 이용설비, 전기공급안정화설비가 있음.
 - 에너지 유효이용설비에는 에너지 유효이용제조설비, 에너지 유효이용부가설비, 전기·가스수요평준화설비가 포함
 - 석유대체에너지 이용설비에는 신에너지이용설비, 기타 석유대체에너지 이용설비가 포함

2) 중소기업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세액공제²⁷⁾

□ 제도의 개요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제작해서 이것을

27) DHC會社稅務釋義, 第一法規

국내에 있는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지정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연도에 그 기준취득원가의 30%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이나 기준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선택 가능

- 1998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특정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거나 제작해서 지정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 중소기업 중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²⁸⁾.

- 소유권이전 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특정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특별상각제도는 적용하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적용함. 여기에 포함되는 리스세액공제는 일정한 리스총액의 60% 상당액에 대하여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인정함.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취득원가는 취득원가로 하고 내항선박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75%로 함.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 등이나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 중소기업 등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이거나 자본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으로 함.

- 대규모법인의 자회사는 제외

○ 농업협동조합 등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출자조합인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연합회, 내항해운조합, 내항해운조합연합회, 출자조합인 환경위생동업조합,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로 함.

○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지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중소기업의 영위사업이 정해져 있음.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수산양식업, 광업, 도매업, 도로화물운송업, 창

28) 자본금 3,0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특별상각은 가능

고업, 항만운송업, 가스업, 소매업, 요리점업, 일반여객자동차운송업, 해양운송업 및 선박운송업, 내항선박대여업, 여행업, 곤포업, 통신업, 손해보험대리업, 서비스업(물품임대업, 오락업(영화업을 제외) 및 특수용장업을 제외)

□ 적용대상설비

- 기계 및 장치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60만엔 이상인 것
- 사무처리의 능률화 등을 위한 기구 및 비품으로 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인 것
 - 전자계산기가 16메가바이트 이상의 주기억장치를 가진 경우에 한하고 이와 동시에 설치하는 부속 입출력장치
 - 인터넷에 접속된 디지털복합기
- 소프트웨어로 취득가액이 70만엔 이상인 것
- 대형화물자동차는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것
- 내항선박은 내항해운업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3)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세액공제²⁹⁾

□ 제도의 개요

- 청색신고법인인 특정중소기업이 198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취득원가의 30%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이나 기준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선택 가능
 -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 가능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이지만, 특정서비스업 중 특정여관업을 영위하는 대규모법인이 취득하는 기계, 비품, 기구 등은 취득가액의 35%로 함.

□ 적용대상자

29) DHC會社稅務釋義, 第一法規

〈표 III-9〉 사업기반강화설비 적용대상자

대상법인	자산(특정사업기반강화설비)
경영개선법의 특정농산가공업자로 경영개선조치에 관한 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당해 경영개선조치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기계 및 장치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계 및 장치, 기구 및 비품, 단, 기구 및 비품 중 컴퓨터에 대해서는 계수형의 전자계산기(주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진 것에 한함) 중 처리어 길이가 16비트 이상 32비트 이하로 설치시에 기억용량이 32메가바이트 이하인 주기억장치를 가진 것에 한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	내용연수 성령 별표 제1의 제1란에 기재된 비품 및 비품 중 동표 제3란에 기재된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가스기구
특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정서비스업 ②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는 특정여관업	상기의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동일 기계 및 장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무대신이 고시지정한 것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의 승인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행한 동법의 중소기업	당해 승인 경영 혁신계획에서 인정하는 기계 및 장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촉진법에서 인정하는 타분야연계 신사업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동법의 중소기업	당해 인정 타분야 연계 신사업분야 개척계획에서 인정하는 기계 및 장치
중소기업에 관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협동조합 등 대규모법인	동법에서 규정하는 인정계획에서 정한 기계 및 장치

- 특정사업기반강화설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청색신고법인으로 법에 제시된 특정중소기업에 한정
 - 중소기업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이거나 자본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으로 함.

□ 적용대상설비

- 위의 특정중소기업별로 특정계획 등에서 인정하는 기계 및 장치로 규정
 -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특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계, 장치 및 기구, 비품을 포함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부칙 별표의 기구 및 비품 중 동 표 제3란에 기술된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가스기구를 포함
- 대상자산은 위에서 서술한 특정사업기반강화설비임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98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을 하여 국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제작 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신품에 한정함)
 -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함. 즉, 기계 및 장치의 경우에는 1대(1기)의 취득가액이 280만엔 이상이어야 하고 기구 및 비품의 경우에는 1대(1기)의 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이어야 함.
 - 대여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소유권이전리스에 의하여 취득되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음.

4) 정보기반강화설비에 대한 세액공제³⁰⁾

□ 제도의 개요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의 취득 혹은 제작을 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취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상각과 기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선택 가능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의 70% 상당액임.
 -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월공제 가능

30) IBFD

□ 적용대상자

-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적용대상설비

- OS기본설비
 - 서버용의 OS(오퍼레이션시스템) 중 ISO/IEC15408의 인증을 받은 것
 - 서버용의 전자계산기(OS가 포함된 것에 한함)
-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ISO/IEC15408의 인증을 받은 것)나 이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방화벽소프트웨어(인터넷에 대응하는 것)나 방화벽장치(인터넷에 대응하는 것) 중 ISO/IEC15408의 인증을 받은 것
- 적용대상설비는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법인구분에 따른 일정액 이상이어야 함.
 - 자본금이 10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회사인 경우는 1억엔 이상
 -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고 10억엔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3,000만엔 이상
 -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과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는 300만엔 이상

4. 대 만³¹⁾

□ 투자인센티브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The Statute for Industrial Upgrading, 이하 “SIU”)에서 규정하고 있음.

- SIU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조세혜택과 비조세혜택을 모두 다루고 있음.
- 조세관련 지원은 연구개발, 인력개발, 신설비 또는 신기술, 신항 주요전략산업, 민간참여 공공건설, 낙후지역투자, 물류센터 설립, 지역운영본부 설립, 회사합병인수 법상 조세혜택, 과세감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신항 주요전략산업, 민간참여 공공건설, 낙후지역투자, 물류센터 설립, 지역운영본

31) 홍범교·기은선,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008.2, 재정경제부·한국조세연구원

부 설립, 회사합병인수법상 조세혜택, 과세감면기간 등은 특정설비에 대한 조세지원이 아니라, 특정산업이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에 해당하고 영리기업소득세에 대하여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식의 조세감면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투자관련 조세지원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고, 특정설비와 관련된 조세지원은 신설비 또는 신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음.
- 설비투자과 관련된 감가상각제도에서는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와 소액자산에 대해서 전액 손금화하여 조기상각을 인정하고 특정설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가속상각하는 것이 가능

□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제도

- 소득의 가득에 사용되는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기계 설비자산, 장비 등에 감가상각이 인정됨.
- 일반적인 설비관련 감가상각은 1종에서 3종으로 구별되며 기계 등 설비와 관련된 제3종의 경우에 각 설비별로 다양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음³²⁾.
 - 제3종의 내용연수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니 2~20년까지 다양
-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의 기계설비 및 NT\$60,0300 이하인 소액자산은 취득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함.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사용시간비례법이 있으며 정률법과 사용시간비례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채택한 것으로 봄³³⁾.
- 가속상각제도가 있음.
 - 기업이 R&D · 실험 · 품질관리를 위해 구입한 장비와 에너지 절약 · 신규청정에너지 도입을 위해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2년간 가속상각이 가능함.
 - 승인청, 신청기한, 신청절차, 기타 관련 사항은 행정원(行政院)이 정함.

32) www.dotsearch.dot.gov.tw 대만 재정부 site

33) CCH TAX Compliance IN Greater China p. 450

□ 투자세액공제

○ 신규장비·기술투자

- 신규장비·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5~20%의 한도 내에서 영리기업 소득세가 면제됨.
- 1년 감면 총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영리기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마지막 연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조세감면비율

〈표 III-10〉 조세감면비율

구 분	신설비	신기술	최저투자액(NT\$)
제조·기술서비스업	11%	10%	600,000
건설업	8%	5%	2,000,000
교통업, 영화제작업, 농업, 폐기물회수처리업, 도소매 및 기술서비스업	8%	5%	600,000

-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비 및 투자세액공제의 내용 등은 표에서 정리

〈표 III-11〉 공제대상 장비 및 투자세액공제 내용 정리

구분	내 용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장비·기술 투자 • 재활용, 오염방지 장비·기술 투자 • 신규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용 용수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기술 투자 •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장비·기술 투자 • 기업의 디지털 효율성 증가를 위한 H/W·S/W·기술 투자(예를 들면 디지털 전기통신 시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통신·전기통신 제품, 전자AV장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승인절차	장비 또는 기술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MOEAIDB 또는 기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세금감면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비 또는 기술의 인도일로부터 5년 동안 투자액의 5~20%를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특정 사업연도의 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마지막 연도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감면세액 추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장비·기술을 인도일로부터 3년 내에 임대·판매·반환·폐기하는 경우(자연재해 제외)

□ R&D 및 인력개발공제³⁴⁾

- 세액공제로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35% 상당액을 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2년간의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액공제를 함.
- 연구개발관련
 - 연구개발비용은 신상품 개발, 생산기술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함.
 - 영리기업소득세 면제 신청시 연구개발 계획, 연구과정을 기록한 문건, 연구개발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1년 감면 총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영리기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마지막 연도에는 이런 제한이 없음.
- 인력개발관련
 - 인재양성계획서 또는 양성인재리스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 1년 감면 총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영리기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으나 마지막 연도에는 이런 제한이 없음.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³⁵⁾
 - 연구개발부서에 전문조사요원의 급여
 - 제품개선기술 혹은 기술적인 서비스 기술을 위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비용
 - 새로운 연구개발 장비의 원가,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부서에 제공되는 원재료 및 샘플
 - 연구개발센터로만 이용되는 연구개발센터 건물의 감가상각 및 임차료
 -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입되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혹은 특별한 권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혹은 상각액
 -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기타 연구개발지출액

34) 국세청, 2008taiwan 대만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및 SIU article6

35) <http://www.kpmg.com.vn/files/ASPACRDbrochure2008.pdf> 참조

IV.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가.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의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있고 그 외에 에너지, 환경설비, 연구개발설비 등 특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또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세액공제방식 외에는 소득공제방식(감가상각의 일시상각, 특별상각 등을 포함)을 통한 조세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외에는 소득공제방식은 없음.
 - 따라서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조세지원이 대부분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설비자산의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음.
 - 다만,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방식으로 선택 가능한 정률법이 200%정률법으로 이론상의 정률법 상각률보다는 높아 가속상각이 가능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조세지원이 에너지설비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환경 보전이나 건물재건비용 및 사내탁아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은 없고 특별상각 형태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 설비 및 환경보전설비가 조세지원대상 설비에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건물리노베이션에 대한 투자가 조세지원에 포함되었음.

- 2004.3.31.까지는 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과 소득공제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 세액공제방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이외는 특정설비로 세액공제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가 우리나라만큼 다양하지는 못함.

- 특별상각의 경우 적용되는 설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와 병행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특별상각의 범위를 세액공제보다 폭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방식으로 선택가능한 정률법이 250%정률법으로 이론상의 정률법 상각률보다는 높아 가속상각이 가능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에는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방식과 가속상각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특정설비(연구개발 및 에너지개발과 절감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2년 이내로 함.

-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디지털효율, 자동화장비 등을 포함하여 넓은 편임.

□ 주요국의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은 국가마다 소득공제(특별상각을 포함)를 위주로 지원하는 영국과 같은 국가도 있고, 세액공제를 위주로 지원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일본과 대만과 같은 나라도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세액공제는 투자지원의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소액자산에

대한 일시상각 및 200%정률법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지원 효과가 있음.

□ 주요국의 설비투자관련 감가상각의 내용 및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서 정리하고 <표 IV-1>은 각 국의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를 비교하고 있음.

○ 단, 설비의 범위는 각 국의 조세지원 대상으로 하는 설비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특별상각포함)의 대상이 되는 설비를 모두 나열하였고,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하게 설비의 대상을 특정설비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교 목적으로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설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주요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IV-1> 조세지원 대상설비의 범위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대 만
연구 및 인력개발설 비	연구시험용 시설	시험연구설비	연구개발설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직업훈련용 시설			특별시험연구비	인력개발비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생산성향상 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	사업혁신설비	자동화장비· 기술투자
	첨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시설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안전설비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	창고용건물	-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 치하는 시설			지진방지대책용 자산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축산물 등에 대한 위해요소방지 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기술유출방지설비				

〈표 IV-1〉의 계속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대 만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태양에너지이용설비, 기타 에너지 절약설비	에너지절약설비	에너지 유효이용제 조설비 ⁴⁾	신규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용 용수 재활용을 위한 장비·기술투자
		청정석탄사업		에너지 유효이용 부가설비 ⁴⁾	
		석탄가스화설비		전기·가스수요 평준화설비 ⁴⁾	
		에너지효율화주택		신에너지 이용설비 ⁴⁾	
		에너지효율화가정용품		기타 석유대체에너지 이용설비 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장비·기술투자
환경보전 시설	환경보전시설	저유황디젤연료	환경보전설비, CO ₂ 배출저감차량	재상품화설비	재활용, 오염방지 장비·기술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대상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	-	-
정보기반 강화시설	-	-	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 ³⁾	OS기본설비 ⁴⁾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 ⁴⁾ 방화벽소프트웨어나 방화벽장치 ⁴⁾	-
건물재개발 관련	-	건물재개발비용	건물리노베이션	특정재개발건물	-
택아시설	-	택아시설	택아시설	-	-
기타	-	-	-	특정전기통신설비	-
				공동이용시설	
				의료용기구	
				문화연구시설 우량임대주택	
투자설비를 특정하지 않는 특례의 존재 여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설비투자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세액공제 ²⁾⁴⁾	-
	임시투자세액공제 ¹⁾			중소기업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 ¹⁾⁴⁾	

주: 1) 업종제한 있음.
 2)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매업이나 소매업, 음식점업, 특정서비스업 등 업종제한도 있음.
 3) 적용기간은 2000.4.1.~2004.3.31.임.
 4) 동일 대상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이 모두 있으며 선택 가능함.

□ 주요국의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내용비교

- 지원대상 설비 중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설비대상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에너지관련 설비, 환경보전설비가 있음.
- 주요국 중 3국 이상이 지원하는 설비로는 건물재개발과 관련된 지원이 있음.
- 주요국 중 2국 이상이 지원하는 설비로는 생산성향상시설, 정보기반강화시설, 탁아시설이 있음.
- 주요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원하는 설비로는 의약품품질관리 대상시설이 있었음.
- 설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국가는 주요국 중 영국과 일본이 있었으며 해당 국가의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함.
 -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지원대상 설비의 범위는 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설비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의 폭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비투자의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원의 깊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함.
 - 즉,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감가상각제도의 일시상각에 따른 자본비용 등에 대한 논의임.
 - 감가상각제도의 일시상각에 따른 자본비용 등은 설비별로 그 효과를 추정하여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제외하였음.
 - 세액공제와 관련된 공제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3~7%이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만 20%의 높은 공제율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30%, 일본의 경우에는 7%이고 정보기반강화설비에 대해서만 10%의 공제율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5~20%의 세액공제율임.
 -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율이 존재하지 않음.

나. 연구개발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

-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경상비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관련 설비는 경상비와 구별하여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경상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액과 증가액에 대한 공제로 나누어져 외국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는 경상비투자를 제외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비교표에서는 연구개발관련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기술
 -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관련 자본적 지출을 경상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최근 산출방식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가하였음.
 - 영국은 연구개발관련 자본적 지출은 100% 특별상각을 적용하고, 연구개발관련 경상비에 대해서는 125%(소기업 150%) 소득공제함으로써 실제 지출액에 25%(50%)를 추가적으로 비용공제하고 있음.
 - 일본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시험연구비의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세액공제율은 10~12%이며 증액에 대해서는 비교시험연구비 등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하여 5%의 세액공제를 함.
 - 대만은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세액공제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총액에 대해서는 35%이며, 직전 2년간의 평균을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액공제를 함.

〈표 IV-2〉 주요국의 연구개발지원제도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한국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액의 7% 세액공제
미국	증가분시험연구비세액공제	- 산출방식 ① $20\% \times \min[\text{기준금액초과분}, \text{당기 적격연구비의 } 50\%]$ ② 기준금액의 1~1.5%에 해당하는 적격연구개발비의 3%+ 기준금액의 1.5~2%에 해당하는 적격연구개발비의 4%+ 기준금액의 2% 초과하는 적격연구개발비의 5% ③ $12\% \times \text{과거 } 3\text{년의 적격연구개발비 평균 초과액}$
영국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 지출액의 125% (중소기업 150%) 소득공제
	연구개발설비 특별상각	- 지출액의 100% 소득공제
일본	시험연구비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 시험연구비비율 ¹⁾ 이 10% 이상: 시험연구비총액 \times 10% - 시험연구비비율이 10% 미만: 시험연구비비율 \times 20% + 8%
	특별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 특별시험연구비 \times 12%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시험연구비 \times 12%
	시험연구비 증액에 대한 세액공제	-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나 기준시험공제비를 초과하는 금액 \times 5% - 시험연구비가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times 5%
대만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times 35% - 연구개발비가 비교시험연구비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times 50% 추가공제

주: 1) 시험연구비비율 = 당해연도 시험연구비/직전 3년 평균매출액

□ 주요국의 연구개발지원제도 비교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이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누어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형태로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이 7%인 데 비하여 일본은 10%, 대만은 35%임.
 - 우리나라는 해당 설비의 투자연도에 설비투자총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데 비하여 일본은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세액공제하므로, 공제율 측면

에서는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자본비용을 고려하면 일본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음.

다. 감가상각제도 비교

□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정액법과 정률법 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정률법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률법보다는 가속하는 형태를 마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률의 200%, 일본의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률의 250%를 정률법의 상각법으로 함.

- 내용연수는 각 설비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폭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음.

〈표 IV-3〉 주요국의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제도 비교

설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 선택 가능	원칙적으로 정률법 ¹⁾ 이나 정액법 선택 가능	정률법	정액법·정률법 ³⁾ 선택 가능	정액법·정률법· 사용시간비례법 ⁴⁾
상각기간	4~25년 ⁵⁾	3~20년	상각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정률법 (20% ²⁾)으로 상각	2~22년	2~20년
상각가능 한도액	100%	100%	100%	100%	90%
잔존가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

주: 1) 내용연수에 따라 200%정률법이나 150%정률법이 적용된다. 200%정률법(150%정률법)은 정액법의 상각률(1/내용연수)을 2배(1.5배)한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일반적인 정률법에 의해 상각비를 계산한 상각비보다 200%(150%)정률법에 의한 상각비가 하회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연수에 걸쳐 균등상각하는 방법으로 전환함.

2) Finance Act 2008에서 상각률이 25%에서 20%로 변경되었음.

3) 2007년 3월 3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률법은 250%정률법으로 이는 정액법의 상각률(1/내용연수)을 2.5배한 상각률을 정률법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제도임. 이 상각비의 금액이 일정금액을 하회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연수에 걸쳐 균등상각하는 방법으로 전환함.

4) 정률법과 사용시간비례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업종별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로 5년, 8년, 10년, 12년, 20년의 5가지 균을 가지고 있으며 25%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상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4~25년의 범위를 가짐.

□ 소액상각제도

- 영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은 소액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연도에 일시에 상각하는 소액상각제도를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에 상각하는 소액상각제도는 없지만 특정설비에 대해 취득연도에 100% 상각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에너지절약 설비, CO₂ 배출저감 차량,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 환경보전을 위한 설비, 건물 리노베이션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R&D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이에 해당됨.

〈표 IV-4〉 주요국의 소액상각제도 비교

설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일시상각 소액기준	100만원	250,000달러 ¹⁾	-	10만엔	NT\$60,000 이하
일시상각 기간기준	1년 미만	구입 첫해	-	1년 미만	2년 미만의 기계설비
기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수선비 손비 인정 • 어구 등에 대한 특례 	\$800,000 초과시 상각액 점차 감소	-	일괄상각제도 : 20만엔 미만 자산 36개월에 걸쳐 상각가능	-

주: 1)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의해 2008~2010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5,000달러로 인하될 예정이며, 총유형자산구입비가 800,000달러 초과하면 공제금액 감소함.

□ 특별상각제도 비교

- 미국의 경우 특정 설비에 대하여 초년도 50% 상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설비 및 기계장치에 대해 중기업은 40%, 소기업은 50%를 초년도에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특별상각 등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음.

〈표 IV-5〉 주요국의 특별상각제도 비교

설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방법	-	• 초년도 50% 상각	• 중기업: 초년도 40% 상각 • 소기업: 초년도 50% 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일정률을 더하거나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더하는 방식 • 특정설비자산별로 규정	-

2. 정책시사점

가.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

□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감가상각비의 한 쪽 측면에서 다루어서는 전체적인 지원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소득공제, 감가상각비를 모두 포함한 검토가 필요

□ 조세지원 대상 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설비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특별상각포함)의 내용을 대상설비별로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특정설비로 조세지원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규정한 예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 국가(영국·일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음.

-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판단됨.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설비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된 설비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하되 주요국에서 지원하지 않는 설비로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설이 있었고, 주요국 2국 이상에서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정하여 지원하지 않는 설비로는 정보기반강화시설과 탁아시설이 있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그 대상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특정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조세지원에 비하여 조세지원 대상 설비자산의 범위는 넓다고 할 수 있음.
-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
- 조세지원 수준은 공제율과 감가상각제도 등의 일시상각에 따른 이자수의 등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임.
 - 감가상각제도 등의 일시상각에 따른 이자수의 등을 검토하기에는 설비별 상각대상 등이 복잡하여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단순하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설비들의 세액공제율을 비교하면, 세액공제와 관련된 공제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3~7%(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만 20%), 미국의 경우 10~30%, 일본의 경우에는 7%(단, 정보기반강화설비에 대해서만 10%)의 공제율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5~20%의 세액공제율임.
 -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율이 존재하지 않음.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의 대상범위가 되는 설비는 주요국에 비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설비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주요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조세지원의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마다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감가상각제도보다는 세액공제제도에 집중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세액공제제도, 소득공제제도(감가상각제도)를 모두 고려하는 세제의 설계가 필요

할 것임.

- 세액공제제도도 현행과 같이 산업전반을 걸쳐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설비)에 집중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유형별로 다양한 세액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출 추이를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전체의 94%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세액공제제도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설비투자 관련 전체 조세지출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의 다른 각 설비자산 유형별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 목적은 경기조절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실태를 보면, 199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6개월의 미적용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기업들 역시 다른 유형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대신 적용범위가 넓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자산 유형별 세액공제를 통합하고 1년 또는 6개월씩 단기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와 유사하게 2~3년 단위로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역시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좀 더 단순화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조세지원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도 있음.

다.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영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대만이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음.

○ 세액공제금액의 산출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취하는 방식이고 일본과 대만은 증가분 또는 총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총지출액의 7%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 보고자 함.

○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비 총액의 10%를 세액공제율로 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의 3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므로 공제율만 비교하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공제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아니고 경상비 성격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서 당해 비용에 설비투자의 감가상각비가 경상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조세지원 효과는 설비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장기에 나타남. 따라서,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임.

라. 특별상각방식을 통한 조세지원

□ 사업용자산의 경우 소액의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자산의 지원 목적의 초년도 일시상각을 허용하고 있음.

○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인 경우 일시에 상각하는 제도는 일본, 대만, 미국에서 허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20~50% 특별상각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4년 폐지되었고 2003.7.1.~2004.6.30.까지 일시적으로 50% 특별상각제도가 운영되었던 바가 있으나 현재는 특별상각제도는 없는 상태임.

○ 각 비교대상 국가 중 감가상각 측면에서 가장 기업에 호의적인 제도로 되어 있는 국

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해 250,000달러의 초년도 비용공제에 50% 초년도 상각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그 남은 금액에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감가상각제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회수 기간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제도로 되어 있다고 판단됨.
- 실제로 감가상각비의 조세지원 효과는 해당국가의 세율이나 이자율 등에 따라 조세지원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회수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일시상각되는 소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00만원의 기준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250,000달러, 일본은 10만엔, 대만은 NT\$60,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설비투자의 지원측면에서 보면 해당 금액을 일시상각하느냐,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하느냐의 문제로 보아 경제적 효과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놓아 관리해야 하는 등의 복잡성을 낳는 부분임.

○ 주요국에 비교하면 미국 및 대만에 비교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일시상각제도로 소액자산에 대한 상각 이외에 일괄상각제도를 두고 3년 안에 일정금액으로 조기상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해당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감가상각제도를 복잡하게 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해당 금액을 과감하게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마. 조세지원의 법형식

□ 투자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조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납세자의 해당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관련 조세지원을 투자관련 세액공제, 감가상각비(시험연구비 등에 대한 가속상각), 연구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누어 볼 때, 감가상각비 시험연구비 등에 대한 가속상각,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의제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내용 중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초년도특별상각을 제외하고는 IRC에 기술된 것으로 한시적인 규정이 아님.

- 감가상각 중 특별비용공제는 해당 공제의 내용은 IRC에 기술되어 있지만 공제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Economic Stimulus Act에 기재하여 변동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관련 조세지원 중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소득공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이는 Finance Act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 해당 제도가 특별법이 아닌 영구법 형태의 Finance Act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inance Act가 매년 전면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해당 제도가 계속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조세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하여 영구입법화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정률법을 250%상각률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의제를 하는 부분은 일반감가상각제도에 포함하여 일반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투자관련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인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에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자관련 조세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영구입법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경기

변동 등에 대처하여 조세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함에 따르는 이익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 조세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법이 과세들을 벗어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영구입법화하기보다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남겨 두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판단

- 다만, 해당 조세특별조치가 경기변동에 따르는 정책적 지원이고, 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단기적인 판단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기간을 2~3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판단됨.

- 연구개발세제와 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구입법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이 필요한 세율 및 적용대상설비 등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향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

바. 조세지원의 대상범위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관련 조세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대상은 내국인에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³⁶⁾하고 있는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을 말함.

- 이 경우에 2007.3.31에 도입된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동업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³⁷⁾에서는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세액공제를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규정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특별조치법의 내국인 규정은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호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2항 제1호

참고문헌

- 국세청, 2008 대만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박명호 외,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6.8.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2004.
- 손원익, 『민간기술개발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7.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2004.
- 제일법규, DHC會社稅務釋義, 2009.
- CCH, Tax compliance in Greater China-China, Hong kong and Taiwan
- CCH, *2008 U.S. Master Tax Guide*, 2008.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07-2008*, 2008.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echnical explanation of H.R.6408, The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 As Introduced In the House on December 7, 2006”,
- Johns, Christopher, *Principles of Business Taxation: Finance Act 2006*, Elsevier, 2007.
- www.ibfd.org, global tax surveys

세법연구 08-11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우철 · 구자은 · 송은주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27-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